

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2016. 7. 26.

발 의 자 : 대구광역시의회
운 영 위 원 회

1. 제안이유

○ 조례 내의 간사 명칭을 위원회내에서 위원장 사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등의 실질적 수행 역할에 맞추고 대구시의회의 대내외적인 위상 제고에도 기여 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음.
(안 제11조 제목, 제1항, 제2항, 제3항)

3. 개정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- 나. 관계법령 : 붙임(「지방자치법」 제62조)
- 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(간사)”를 “(부위원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간사”를 “부위원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간사는”을 “부위원장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간사가”를 “부위원장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간사)</p> <p>① 위원회에는 <u>간사</u> 1인을 둔다.</p> <p>② <u>간사</u>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.</p> <p>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<u>간사가</u>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</p>	<p>제11조(부위원장)</p> <p>① --- <u>부위원장</u> --- ---.</p> <p>② <u>부위원장은</u>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<u>부위원장이</u> ----- ---.</p>

관계 법령

【지방자치법】

제62조 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